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62

발의연월일: 2021. 3. 19.

발 의 자: 강선우 · 김정호 · 윤재갑

조승래 • 윤관석 • 김경협

위성곤 · 강병원 · 정춘숙

김승원 · 김종민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보건복지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<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> 및 <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>를 진행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 상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 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,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 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중단·실업·노숙·범죄·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종료아 동을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수집 및 실태조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 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,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(안 제3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3호 중 "실태조사 및 연구"를 "연구"로 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8조의2(자립지원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, 생활 및 정서적·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 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조사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	제38조(자립지원) ①
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	
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	
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	
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	
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자립에 관한 <u>실태조사 및 연</u>	3 <u>연구</u>
<u>구</u>	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38조의2(자립지원 실태조사) ①
	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
	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
	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
	원, 생활 및 정서적・신체적 건
	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
	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
	<u>기관・법인・단체・시설의 장</u>
	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
	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-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조사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 로 정한다.